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=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. 6. 8 .----- 최광렬의원의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8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39회 임시회(개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6.6.15) 상정 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**

**가. 제안이유**

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의2 (2006.4.28 신설. 2006.7.1일부터 시행)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의 개정으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**나. 주요골자**

-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(안 제2조)
- 위원회 개최의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등 해당의원에게 통지(안 제3조)
- 윤리심사대상의원등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(안 제5조)
- 윤리심사대상 의원 등은 필요한 증빙서류, 해명자료 등 제출(안제6조)
-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8조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본 규정 제정안은 2006.4.28 「지방자치법」 개정과 이번 회기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의회 「윤리특별위원회」 를 구성함으로써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

- 특별위원회 구성과 출석요구 및 통고방법, 위원회 심사자격, 해당 위원의 소명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
- 기존 「징계특별위원회」 와는 달리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직시 하였으며,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징계방법 뿐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동시에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 략**

**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**